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7
----------	-------

제안연월일 : 2024. 4.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3.8.)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제2항)
- 나.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라. 입법예고: 2024.4.4. ~ 2024.4.10. (의견 없음)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
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 략)</p> <p>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u>900,000원</u>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u>200,000원</u>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200,000원</u> ----- <u>300,000원</u> -----. ----- -----.</p> <p><u>부 칙</u></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u></p>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 제2항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2조(의정활동비)

나. 전제

- 마포구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2024~2028) 비용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710,000천원(연간 342,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제2조 (의정활동비)	342,000	342,000	342,000	342,000	342,000	1,710,000
	소계(b)	342,000	342,000	342,000	342,000	342,000	1,710,000
	총비용(b-a)	342,000	342,000	342,000	342,000	342,000	1,71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최은영
연락처	02-3153-6164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